



제300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**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[자치행정위원회 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. 25.

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,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,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17호)
- 나. 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를 확대(안 별표 3 제1호라목4)
(현행)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
(개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다.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6))
- 라. 「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7)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1. 18. ~ 2024 . 1. 22. (5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신설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- 안 제11조에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예우를 강화하였고,

- 별표 3의 사용료 징수기준에

● 정부의 저출산·고령사회 지원 정책에 따라,

다자녀가정의 감면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며,

●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100분의 3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, 사용료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참고자료]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

-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: 50% 감면
→ 규칙으로 50% 감면 예정
-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2자녀 이상) : 다자녀와 부·모에 한하여 50% 감면
-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 : 30% 범위 내
- 에코-랜드 주변지역 거주자의(별내면 청학리·용암리 및 광전리) 별내면 내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: 30% 범위 내

[주요 시설별 감면율]

(단위: 원, 평일 체육행사 2시간 기준)

시설명	구분		사용료	동호회 할인	개정문 적용	최종 이용료
축구장	주간	현재	40,000	50%	-	20,000
		개정			30%	14,000
	야간	현재	60,000	50%	-	30,000
		개정			30%	21,000
테니스	주간	기존	10,000	50%	-	5,000
		개정			30%	3,500

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
☑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3.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5.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「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17호)
- 나. 「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를 확대(안 별표 3 제1호라목4)
 (현행)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
 (개정)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다.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6))
- 라. 「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(안 별표 3 제1호라목7))

2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
 - 2023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및 행정복지센터 세외수입 금액을 반영하여 규모 설정(13,573,233천원)
 - 남양주도시공사 세외수입액: 12,707,402천원
 - 행정복지센터 세외수입액: 865,831천원
 - 장기 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(7,712명, '23.10월 기준)의 시설 이용으로 인한 비용산출과 기타 시설별 이용요금 및 부대시설 변경분은 경미하고 시설별 적용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추계 미반영
 - 다자녀가정 지원 조문 관련 2023년도 다자녀 감면금액 반영하여 규모 설정 (현행 대비 △1,585,000천원)
 - [현행 기준] 14,491세대 → 702백만원)
 - [개정 후] 47,217세대 → 2,287백만원)
 - 체육문화센터 2023년 세외수입 : 10,178백만원
 -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문은 선언적 성격으로 비용 추계 미반영
 -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체육시설 감면 적용 시

수입 규모는 현행 대비 3,057천원/년 감소로 경미한 수준임
 - 2023년도 별내면 이용요금(10,523천원) * 130% = 13,680천원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
총 소요액	△1,323.5	-	-	-	-
다자녀가정 범위 확대	△1,321	-	-	-	-
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감면조항 신설	△2.5	-	-	-	-

**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
 및 동법 별표 개정 관련**

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유형식